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686
----------	------

제안년월일 : 2025. 4. 23.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하수도 정비사업의 단계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서울시 하수도 정비사업을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최근 5년간(20~24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85건이며, 이 중 38건(44.7%)이 노후하수관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서울시 하수관로 연장은 10,866km에 달하며, 이 중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6,029km로 전체 하수관로의 55.5%를 차지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서울시 관내 물재생센터의 경우 1976년부터 지금까지 약 50여 년간 운영되면서 평균 노후도가 86.7%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강화된 수처리 기준 충족을 위해 시설개선 및 현대화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노

후하수관로와 노후물재생시설 정비에 2030년까지 약 6조 2,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추계하고 있음.

- 이처럼 막대한 소요예산으로 인해 서울시의 노후하수관로와 노후물재생시설 정비 사업은 지금의 열악한 하수도 재정을 고려할 때 기약없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물재생시설 운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법정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서울시 하수도 정비사업을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가. 국회 :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나. 정부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5. 첨부 :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최근 5년간(20~24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85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8건(44.7%)이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 연장은 10,866km에 달하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6,029km로 전체 하수관로의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서울시 하수관로의 절반 이상이 노후되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낡은 인프라를 방치할 경우 지반침하는 물론 도로함몰, 하천 및 지하수 오염, 악취 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 또한,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 50여 년간 운영되면서 평균 노후도가 86.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시설 전반의 기능 저하와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하수처리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를 겪고 있으며, 강화된 수처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개선과 현대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노후하수관로와 노후물재생시설 정비를 위해 2030년까지 약 6조 2,1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추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열악한 하수도 재정만으로는 이

러한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상황입니다.

[표] 서울시 하수도사업 주요 소요재원 추계(2026년~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6,219,244	1,259,252	1,317,545	1,175,855	1,206,854	1,259,738
하수관로	2,267,424	484,218	479,614	452,797	433,386	417,409
물재생시설	3,695,820	724,234	786,931	671,858	722,068	790,729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256,000	50,800	51,000	51,200	51,400	51,600

※ 상기 표는 서울시(물순환안전국) 추계 자료임.

-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턱없이 부족한 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정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안전을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중앙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지반침하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노후화된 물재생시설은 언제라도 가동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는’ 극장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

한 하수도 정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서울시 하수도 정비사업을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 4. 2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붙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안의 수정조문대비표

〔붙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안의 수정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30.(생략)	(생략)	(생략)	1.~30.(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1. 하수처리장 확충	<u>광역시</u> (군지역 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 별자치도 및 시 · 군: 60		31. 하수처리장 확충	<u>특별시, 광역시</u> (군지역은 제외 한다): 30 특별자치시, 특 별자치도 및 시 · 군: 60	
32.~111.(생략)	(생략)	(생략)	32.~111.(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2. 하수관로 정비	<u>광역시</u> (군지역 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 별자치도 및 시 · 군: 60 일반: 50		112. 하수관로 정비	<u>특별시, 광역시</u> (군지역은 제외 한다): 30 특별자치시, 특 별자치도 및 시 · 군: 60 일반: 50	
113.~122.(생략)		(생략)	113.~122.(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